

문서번호	자치행정과-4635
결재일자	2016.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최종삼	이철암	박성도	손정수	전결 02/26 김병환	
협 조	홍보전산과장 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		유인욱 홍동석 이경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2016. 2.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주요일정에 따른 선거관리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선거 개요

- 선거일 : 2016. 4. 13.(수) 06:00~18:00
- 선거기간 : 2016. 3. 31.~ 4. 13.(14일간)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 선출인원 : 2명 ※ 전국 300명(지역 246석, 비례 54석 예상)
- 주요 선거사무 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선거일전 120일부터) '15.12.15.~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선거일전 49일부터 10일간) ... '16.02.24.~03.04.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선거일전 30일) '16.03.13.
 -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16.03.22.~03.26.
 - 후보자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16.03.24.~03.25.
 - 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 '16.04.01.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16.04.03.
 - 선상투표(선거일전 8일부터) '16.04.05.~04.08.
 - 사전투표소 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6.04.08.~04.09.
 - 투표 및 개표 '16.04.13.

투표관리 기본현황

- 선거인수 : 총 385,241명 (※ 2015.10.31.기준)

선거구명	투표구수	인구수	세대수	19세이상 주민수
총계	96	462,611	192,908	385,241
갑선거구	49	243,275	102,766	201,548
을선거구	47	219,336	90,142	183,693

- 개표소수 : 1개소 (※고대부고 강당 예정)
- 선거구별 현황

구분	동명	비고
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동, 정릉2동, 정릉3동, 정릉4동, 길음1동	11개동
을선거구	돈암1동, 길음2동, 종암동, 월곡1동, 월곡2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관동	9개동

II

추진방향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한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선거사무 인력 확보 및 선거사무 실무자 교육
- 선거관리 각종 기본통계 정비 철저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및 운영

- 공직선거·재외선거 업무편람 교육 및 선거인명부 등 작성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 구축

성실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 등 홍보활동 전개

- 전광판, 시·구 홈페이지,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 등 공명선거 홍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협조

- 투·개표사무원 및 불법선거 감시단원 등 인력 지원·협조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및 투표소의 집기 등 장비 지원·협조

《 제20대 총선에서 달라진 점 》

주요항목	19대 총선('12.4.11)	20대 총선('16.4.13)
사전투표제 도입	- 부재자투표	- 사전투표제 도입(전국 어디서나) ※ '13.1.1.부터 적용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변경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집행유예자·수형자 선거권부여	- 집행유예자 및 수형자 선거권 제한	- 일반범 집행유예자 선거권부여 ※ '14.6.4. 지방선거부터 적용 - 1년 미만 수형자 선거권 부여 ※ '16.1.1.부터 적용
선상부재자투표 도입	- 미 규정 ※ 제18대 대통령선거부터 적용	- 선박에 승선(예정)하고 있는 선원 ※ '16.1.1.부터 적용
사전투표소 선거전용 통신망 구축	- 규정없음	-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

Ⅲ 선거관리예산

선거관리경비 부담 주체

-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 국가
- 지방의회의원, 단체장 선거 : 당해 지방자치단체
- 교 육 감, 교 육 의 원 : 당해 교육청

국비 배정내역

- 배 정 액 : 총 50,102천원
- 배정내역

구 분	계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여 비	업무추진비
계	50,102천원	6,323	37,849	3,247	2,683

※ 배정기준(서울시)

- 일용인부임, 임차료 : 동수 100%
- 공공요금 : 인구수 100%
-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 동수 50%, 투표구수 50%

IV

세부 추진계획

1 선거사무 추진체계 구축

□ 『선거사무지원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 2. 26.~ 4. 15.(50일간)
- 운영장소 : 성북배움터(3층)
 - 선거사무(2241-6484~8), 주민전산(2241-6743)
- 운영인원
 - 추진반장 : 자치행정팀장
 - 추진반원 : 4명(자치행정과 직원)
- 운영체계 : 행정자치부 ↔ 시 지원반 ↔ 구 지원반 ↔ 동주민센터
(시선관위 협조지원) (구선관위 협조지원)
- 주요업무
 - 법정선거사무 추진 및 공명선거 활동 지원
 - 선거관련 사건·사고 등 파악 및 종합관리
 -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지원 등
 - 사전투표일(4.8.~4.9), 투표일(4.13.)에는 「투·개표 지원상황실」로 전환

□ 선거사무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 행정자치부 주관 교육
 - 일시/장소 : 2. 17.(수) 10:00~18:00 / 세종대 대양홀
 - 대 상 : 구·동 선거 및 전산담당 공무원 44명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 제반사항 등
- 구 주관 교육
 - 일시/장소 : 3. 7.(월) 10:00, 14:00 / 구청 다목적홀
 - 대 상 : 간사, 서기, 투표관리관 등 선거관련 공무원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사무처리 요령 등

2 차질없는 선거사무 관리

주민등록 일제정리 ※ 별도 세부계획에 의거 추진

- 기 간 : 1. 15.(금) ~ 3. 16.(수) (62일간)
- 추진기관 : 동주민센터
- 중점 정리내용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

『법정선거서식』 제작 및 배부

- 제작·배포 : 3월 초 ※ 시 일괄제작·배부
- 제작대상 : 선거인명부 표지 등 법정선거서식
 -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서, 선거인명부 열람기간과 장소 공고문 등 26종
 - 기타 서식은 자체제작·배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

- 작성기간 : 2. 24. ~ 3. 4. (10일간)
- 대 상 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2.13)현재,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자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행정자치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및 작성상황 송부

‘선거권 없는 자’ 조사·정리

- 추진기간 : 3월 ~ 4월(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 대 상 : 선거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자’
- 추진방법 : 주민등록지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 : ‘선거권이 없는자’ 명단 작성 후 등록기준지로 확인 요청
 - 등록기준지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대조, ‘선거권 없는 자’ 주민등록지로 통보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자 처리

- 추진기간 : 3. 22. ~ 3. 26. (5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주요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신고인명부 작성
 - 선상투표신고 및 선상신고인명부 작성
- 명부 작성상황 통보
 -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투표·거소투표용지 4.3(일)까지, 선상투표용지 4.4(월)까지 발송 조치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인 조치

- 열람기간
 - 국외부재자 신고인명부 : 3. 5. ~ 3. 9.(5일간)
 - 국내선거인 명부 : 3.27. ~ 3.29.(3일간)
- 열람장소 :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
- 열람내용 :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 이의신청의 처리 : 구술 또는 서면신청에 의거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

선거인명부 확정

- 확 정 일 : 4. 1.(금)
- 명부 확정상황 통보
 -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작성상황 송부
- 기타사항
 -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구 홈페이지 내 등재여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 확인토록 조치(4.2.~4.13. 18시까지)

법정선거업무 추진상황 점검

- 기 간 : 3월 ~ 4월
- 점 검 반 : 선거사무지원반장 외 5명
- 점검대상 : 20개동
- 주요 점검내용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열람·이의신청 상황
 -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 및 전산 운영장비 등 장애·보안 관리
 -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 등 선거업무 추진 상황 등

사전투표소 투표

- 투표기간 : 4. 8.(목) ~ 4. 9.(금) (2일간)
- 투표시간 : 06:00 ~ 18:00
- 투 표 소 : 동주민센터별 1개소
- 기타사항
 -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통합선거인명부에 따라 투표 가능
 - 사전투표소 보안 강화를 위해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의무화

투 · 개 표

- 투 표 일 : 4. 13.(수)
- 투표시간 : 06:00 ~ 18:00
- 투표소의 설치 및 공고
 -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 설치, 선거일전 10일까지 명칭과 소재지 공고
-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확보 시 유의사항 준수
 - 투표구안의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 확보
 - 장애인, 노인 등의 불편 최소화 조치
 - 가능한 1층 투표소 최대한 확보, 투표소 안내도우미 배치
 - 현장점검을 통해 임시경사로 설치, 장애인 편의도모
- 개표시간 : 투표종료 후 즉시 개표 실시

○ 투·개표소 안전관리 철저

- 인화물질, 폭발물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선거당일 경찰·소방공무원의 투표소 순찰 및 개표소 배치 협조
-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서장에게 원조 요청

투·개표 지원 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4. 13.(수) 05:00 ~ 개표 종료시까지
- 운영장소 : 구청 6층 미래기획실
- 운영체계 : 행정자치부 ↔ 시 ↔ 구 ↔ 동주민센터
- 주요기능 : 투·개표 진행상황 관리, 사건사고 처리 등

3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투표참여 홍보

-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선거법 교육 : 3월중
-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방법 활용
 - 구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운영
 - 선관위,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 적극 홍보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공명선거 참여 및 신고 활성화
 - 구 홈페이지, 전광판, 지역신문·방송, 반상회보 등 활용
- 소속직원의 불법선거 감시·제보 안내
 - 공직내부 선거관여 감시 및 제보 분위기 조성, 선거중립 철저 확립

선거개입 오해소지 행위 사전방지

- 대내외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등 각종 활동 시 선거법 위반 또는 선거개입 시비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
- 소속기관, 유관단체, 통·반장 등의 선거중립 관리 감독 철저

4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원

인력지원 협조

- 투표구의 투표관리관 및洞위원회 간사·서기 등 투표사무종사원
- 투·개표사무 종사원, 불법선거운동 감시단 구성 요원
- 선전벽보 첩부, 투표안내문 발송 인력 등

시설·장소지원 협조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후보자 선전물 발송작업 장소제공
- 투표소·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등

장비지원 협조

-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공명선거 홍보용 차량 지원 등

각종 지원사항의 정확한 관리

- 인력·시설·장비 등의 제반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거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IV

행정사항

전부서

- 사전투표사무원 추천 및 투·개표사무원 근무 협조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 철저
- 선거사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 협조
- 선거일정을 감안하여 동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회의 및 차출 자제

전 동

- 일정별 법정 선거업무 추진 철저
- 투표소 관리 및 안내 철저
- 사전투표 관리 및 진행 철저

감사담당관

- 공명선거 추진 감찰 운영

행정지원과

- 선거사무지원반 사무실 사용 협조 : 3층 배움터
- 선거 담당자 등 교육, 회의 시 각종 시설 대관 우선 협조

홍보전산과

- 공명선거, 선거일정 및 투표참여 홍보
- 선거사무지원반 인터넷전화 랜망 구축

붙임 :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1부
2. 각종 제출서식 1부.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15. 11. 15. 부터 '16. 2. 13. 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16. 1. 14. 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1. 14.부터 4. 13.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 13.부터 4. 13.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 24.부터 3. 4.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3. 22.부터 3. 26.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 24.부터 3. 25.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3. 30.부터 4. 4.까지	수 월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8시 ~ 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3. 31.	목	선거기간 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4. 5.부터 4. 8.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4. 8.부터 4. 9.까지	금 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4. 13.	수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 거 일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서식 1] 사건·사고 발생 보고(즉보)

수 신 : 자치행정과장

발 신 : ○○○동장

제 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관련 사건(사고) 발생보고

1. 사건(사고) 개요

- 일시, 장소, 사고경위(내용), 조치사항

2. 조치계획

- 자치단체, 검·경, 선관위 등 관계부처의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등

〔 서식 2 〕 미담·수범사례, 특이사항 등 보고(즉보)

수 신 : 자치행정과장

발 신 : ○○○동장

제 목 :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 관련 미담(특이사항) 사례 보고

-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 작성

[서식 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2.24, 3.4)

(단위 : 명)

시·도명	구·시·군·명	① 공관명부 접수자			수정에 의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④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에 대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	비고
		계	등재자	미등재자	증	감	구분	계	②공관접수 등재자	③구·시·군 접수 등재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당초 통보된 공관명부 접수자의 수를 기재한다.
-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공관명부 등재자의 수를 기재한다.
-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 중 해당 구·시·군의 장이 접수한 사람의 수를 기재한다.
- ④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4]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3.14)

(단위 : 명)

①접수 기관명	②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직권수정에 의한 감	④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⑥인구수 (연월일 현재)	인구수대비 국외부재자 신고인수 비율(%)	비고
	계			증	감				
	계								
	남								
	여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접수기관명"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접수기관"의 순에 따라 기재한다.
 - ②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서상의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 ③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 확정전까지 사망·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에 의한 이의신청·불복신청 등에 대한 결정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국외부재자신고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서 ③, 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 ⑥인구수는 국외부재자 신고기간만료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2.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확정된 국외부재자 신고인수'란을 점선으로 구분하여 그 아래에 별도로 기재한다.

[서식 5] 선거인명부 작성상황(3.22)

○ 총괄

(단위 : 명)

투표구명	인 구 수 ('16년 3월 22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세 대 수	비 고
		계	남	여			

주 :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인구수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세대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쉼표(,)로 구분한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6]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3.27)

(단위 : 명)

투표구명	인 구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수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현재)			확정된 (거소투표) · (선상투표) 신고 인수			인구수에 대한 (거소 투표) · (선상투표) 신고인수 비율(%)	선거인수에 대한 (거 소투표) · (선상투 표)신고인수 비율(%)	비 고
		계	남	여	계	남	여			

주: 1. 인구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적습니다.

- "인구수 · 선거인수 · 확정된 (거소투표) · (선상투표)신고인수"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와 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서식 7] 투표소 공고상황(4.3까지)

○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계	설 치 장 소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설	기타
투표소		개소						
장애인 편의	승강기 설치	개소						
	안내 도우미	명						

※ 기타 :

○ 건물내 설치 투표소 층수별 현황

구 분		계	건물 층수별				※임차 투표소수
			지하	1층	2층	3층이상	
투표소		개소					
장애인 편의	승강기 설치	개소					
	안내 도우미	명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 상황

명 칭	소재지(시설명)	설치·운영기간(부터~까지)

[서식 8] 선거인명부 확정상황(4.1)

○ 총괄

(단위 : 명)

투표구명	① 인구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불복신청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정된 선거인수	⑥ 거소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⑦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등재자수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	⑧ 세대수	비고
			감	증	감	증						
		계										
		남										
		여										

주 :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의 인구수를 기재한다.
 - ②란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상의 선거인수(거소·선상투표신고인수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 ③란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④란은 선거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불복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이 지난 후부터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에 대한 명부등재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기재한다.
 - ⑤란은 ②란의 선거인수에 ③·④란의 수를 증감한 수를 기재한다.
2. ①부터 ⑧까지의 란에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따로 적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작성(⑥⑦란 제외)하되, ()안에 재외국민의 수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수를 적어 각각 쉽표(.)로 구분한다.
 3.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권만 가지거나 동시선거에서 일부 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어 선거인수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이 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 <선거인명부수정상황>과 별지 제2호 <선거인명부확정내역>을 작성·첨부한다.

○ 선거인명부확정내역

(단위 : 명)

투표구명	확정된 선거인수 (①②③)	①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					②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					③ 외국인 선거인수	비고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계					계							
		남					남							
		여					여							

주 :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①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②란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이 된 재외국민 선거인수를 기재하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선거인, 거소·선상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은 동시선거에서 일부선거의 선거권만 가지는 사람이 있는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 하는 자)에는 선거별로 구분하여 그 수를 기재한다.
- ③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선거인수를 기재한다.

[서식 9] 투·개표사무원 위촉·공고상황(4.10까지)

○ (사전투표)투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 관 직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 개표사무원 위촉 공고상황

계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교직원	금융기 관 직	정부투자 기관직원	지방공사· 공단직원	일반인
명							

[서식 10] 투·개표소 설치상황(4.12까지)

구 분	합 계	장 소 별					
		학교시설	관공서	주민회관	공공시설	민간시 설	기타
투표소(개소)							
개표소(개소)							

※ 기타 :